

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 및 업적에 관한 세부지침

시행일 : 2018.9.1.

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본교 시간강사규정에 의거 음악대학 시간강사의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 및 업적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박사학위 상응자격) ① 다음과 같은 최고예술학위는 학술학위의 박사에 상응하는 자격으로 인정한다.

1. 콘체르트엑싸멘(Konzertexamen, 독일)
2. 아티스트 디플로마(Artist Diploma, 미국)
3. 씨클 드 페르펙씨온느망(Cycle de perfectionnement, 프랑스)
4. 이외 나라별 음악대학 교원인사소원회가 인정하는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학위인 경우
5. 비고 : 클래식 음악의 본 고장인 유럽에서 연주자 학위는 나라, 지역, 학교에 따라 상이. 국내 및 미국의 학위와 비교하여 볼 때 근본적으로 학제가 다르게 운영되나 학사, 석사, 박사학위 제도에 준하는 제도는 오래 전부터 있었음. 유럽의 음악대학에 개설된 연주자를 위한 최고의 과정은 'Konzertexamen(유럽의 나라별로 학위명이 다를 수 있음)' 학위는 음악대학 최고의 학위로 학위제도 상 국내 및 미국 음악교육제도의 박사학위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음

제3조(박사학위 상응업적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업적으로 인정한다.

1. 음악대학 교원인사소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전문연주단체에 재직한 경우(상임지휘자, 악장 및 리더, 또는 수석 주자(부수석 경우 5년)로 통산 3년 이상)
2. 음악대학 교원인사소위원회가 인정하는 국제음악콩쿠르 입상실적이 있는 경우(콩쿠르의 지명도 및 입상 실적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함)
3. 석사학위 또는 디플롬 소지자로서 발령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연구실적이 400점 이상인자(단 음악대학 교원인사소위원회가 인정하는 연구실적에 한하며, 연구실적의 인정기준은 경희대학교 연구실적물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함)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지침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지침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